##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77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김문수·조계원·이수진

권향엽 · 허성무 · 김준혁

신정훈 · 김동아 · 정일영

박지원 • 박해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	제10조(적용 제외)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
의 적용을 받는 <u>사람</u> <u>&lt;단서</u>	사람. <u>다만,</u>
<u>신설&gt;</u>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